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 12. 3. (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임 기 중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8년 11월 21일

○ 회부일자: 2018년 11월 22일

3. 제 정 이 유

충청북도 학생의 자살예방 교육 및 지원체계 마련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존중의식 함양과 자살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4. 주 요 내 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원회 설치(안 제5조)

라. 전담기관 설치·운영(안 제6조)

마. 담당자 지정(안 제7조)

바. 자살시도 학생 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사.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안 제9조)

아. 실태조사(안 제10조)

자. 예산지원(안 제11조)

차. 비밀준수 의무(안 제12조)

5. 검토의견

- 충북지역 청소년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자살이며, 최근 몇 년간 각종 통계자료에서 충북 청소년자살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상위권으로 나타나면서 충북 청소년자살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 이에 청소년자살 예방과 대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시행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자살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교육적 여건 확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학생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명시한 것은 학교 급별로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화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원회와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9조에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하도록 한 것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조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과 대처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 됨.